■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7.>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병역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통지서 수령인	처음						
	변경						

「병역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변경)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통지서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 중에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2.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